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4. 11. 21 선고 2022가단134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욱, 신유리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희

변론 종결 2024. 10. 17.

판결 선고 2024. 11. 21.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논산시 C 전 4,14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10. 20. 접수 제271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입목벌채 허가에 따른 입목벌채

1) 원고는 2010. 7. 당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금산군수로부터 ① 금산군 D, E 소재 벌채면적 16.0헥타르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0. 7. 2.부터 2011. 6. 30.까지로, 허가수량을 14,000본으로 하는 입목벌채 허가를, ② 금산군 F, G 소재 벌채면적 9.4헥타르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0. 7. 2.부터 2011. 6. 30.까지로, 허가수량을 8,460본으로 하는 입목벌채 허가를 각 받았는데, 위 각 허가에는 '모두베기(개벌) 후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조림을 하여야 한다(조림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0. 11. 금산군수로부터 ① 금산군 H 소재 벌채면적 50.0헥타르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0. 11. 2.부터 2011. 9. 30.까지로, 허가수량을 38,250본으로 하는 입목벌채 허가를, ② 금산군 I, J, K, L, M(임) 소재 벌채면적 8.0헥타르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0. 11. 2.부터 2011. 9. 30.까지로, 허가수량을 6,720본으로 하는 입목벌채 허가를 각 받았는데, 위 각 허가에는 '모두베기(개벌) 후에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반드시 조림을 하여야 한다(조림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었다.

3) 원고는 위와 같은 각 입목벌채 허가에 따라 입목벌채를 하였다.

나. 보조조림사업 신청 불허

1) 원고는 위 입목벌채를 한 후에 2011. 11.경 금산군수에게 보조조림사업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금산군수는 2011. 10. 24.과 2011. 12. 12.에 '원고가 보조조림사업을 신청한 장소는 입목벌채 허가를 득한 장소로 입목벌채 허가 내용을 준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원고는 다음해인 2012. 12.경 금산군수에게 재차 보조조림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금산군수는 2013. 1. 29.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2) 원고는 2013. 11. 6.경 금산군수에게 다시 보조조림사업 신청을 하였는데, 금산군수는 2014. 1. 17. '당초 허가 당시 계획대로 자력으로 조림을 이행하여야 하며, 충청남도 공문에 의하면 자력조림을 위하여 벌채한 지역은 보조조림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여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

1) 금산군수는 2012년 5월, 6월과 2013년 12월 산림자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조림을 이행할 것을 통지하면서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림비용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것임을 알렸음에도 원고가 조림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4. 4. 원고에게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5. 금산군수의 위 보조조림사업 비해당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36)의 재판이 종결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금산군수는 원고의 의견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의 진행을 멈추었다.

3) 과태료 부과처분

원고가 제기한 위 행정소송은 2015. 11. 원고의 패소로 확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4구합436, 대전고등법원 2015누10139, 대법원 2015두52661), 이에 금산군수는 2016.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과태료 납부 통지(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원고의 수취거절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2016. 5. 원고에게 다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2016. 6. 7. 원고에 대한 과태료 납부 통지를 공시송달하였고, 위 통지는 공고기간이 도래한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해당법조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79조 제5항

과태료부과사유 : 벌채지에 대한 3년 이내 조림 미 시행

과태료금액 : 금 379,443,400원

과태료부과기준 : $5,066,000\text{원/ha} \times 74.9\text{ha} = 379,443,400\text{원}$

라. 압류처분

1) 금산군수는 2016. 7. 원고에게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면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가산금과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고, 2016. 9. 원고에게 다시 과태료 납부를 촉구하면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처분을 하게 됨을 알리는 '과태료 납부 촉구 및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으며,

2016. 11. 원고에게 '과태료 납부 촉구 및 부동산 압류예고 최종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2) 금산군수는 2019. 5. 원고에게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촉구 및 재산 압류예고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자 압류 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2019. 6. 10. 원고 소유의 논산시 N 전 4,14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마. 공매처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1. 12. 금산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받고 공매절차를 진행하여(이하 '이 사건 공매처분'이라 한다), 2022.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과태료처분이 무효이므로 후행처분이 이 사건 공매처분 역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매처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3. 4. 2. 이 사건 공매처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압류처분 전 원고는 금산군수로부터 과태료 납부 독촉 및 부동산 압류예고 공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는바, 독촉 없이 행해진 이 사건 압류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결국 후행행위인 이 사건 공매처분 역시 무효이거나, (2)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는, ① 원고의 벌채지 중 조림예외지역이 존재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과태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하자, ② 산림자원법 제79조 제5항은 '해당 조림비용의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소요된 조림비용을 과태료로 부과하여야 함에도 산림청 고시 제2013-1호에 고시된 조림비용을 근거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한 산림자원법의 취지에 반하여 법령의 위임도 없이 임의로 위 산림청 고시를 과태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하자, ③ 조림명령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한 규정, 행정조사기본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의견청취와 현장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하자(제2-③주장)가 있고, 이는 모두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무효이며, 결국 후행행위인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매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실(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972), 위 법원은 2024. 7. 10.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배척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의 (1)주장에 관한 판단 : ① 원고는 피고의 2016. 1.자 과태료 납부 통지부터 줄곧 수취거절,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피고가 발송하는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하였던 점, ② 원고는 과태료 부과, 부과된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등의 통지를 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산군수의 우편물 일체의 수취를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금산군수는 우편함에 놓아두거나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유선으로 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하려고 노력하였던 점, ④ 위 과정에서 원고가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금산군수의 정당한 행정처분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수취를 거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의 (2)-①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산림자원법령상의 조림예외지역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2)-②주장에 관한 판단 : 산림자원법 제10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조림을 하여야 하는 기간, 조림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그 세부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법 제1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조림비용은 조림에 소요되는 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자원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조림명령을 받은 자가 조림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하는 조림비용의 산정은 최종적으로는 산림청장의 고시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적법한 법령의 위임에 의한 산림청장의 고시에 따른 조림비용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 원고의 (2)-③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처음부터 벌채 후 반드시 조림을 하여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목벌채 허가를 받았던 점, ② 금산군수는 원고에게 세 차례에 걸쳐 조림명령을 통지하였던

점, ③ 원고는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고, 금산군수는 원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관련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기다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산군수가 원고에게 조림명령이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면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과태료처분과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공매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숙미